영등포구의회 제16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討報告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2. 2.23

行政委員會 專門委員 李憲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討報告書

1. 경 과

의안 제103호로 2012년 2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2년 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도로명주소법」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를 도로명 주소로 사용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도로명 주소로 표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영등포구청 위치인 "당산동3가 385-1번지"를 "당산로 123"으로 변경(안 제2조)
-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순화

4. 참고사항

O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제21조

「지방자치법」제6조

O 예산조치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도로명주소법」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를 도로명 주소로 사용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도로명 주소로 표시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에서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함.
- 안 제2조에 영등포구청의 위치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번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으로 변경함.
- 그 밖에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 이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일부개정 및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구청의 위치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변경한 것으로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하여 공간표시를 통일화· 선진화하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구민의 인식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으로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도로명주소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

-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표시 또는 주소 표시
-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시 주소표시
- 3.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 4. 공문서 발송시 주소표시
- 5. 위치안내표시판 제작과 위치표시 및 위치안내
-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치안내
- 7. 그 밖에 주소 및 위치표시와 관련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개정 2009.4.1〉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